

항공교통관제교육원 규정



한국항공대학교

개정 기록표

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	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
1	2004.8.16		16		
2	2012.8.24		17		
3	2013.12.5.		18		
4	2015.7.1		19		
5	2016.10.28		20		
6	2018.6.15		21		
7			22		
8			23		
9			24		
10			25		
11			26		
12			27		
13			28		
14			29		
15			30		

항공교통관제교육원 규정

제1장 총칙

제1조 (목적) 본 항공교통관제교육원은 항공안전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의거 관할청 지정 전문교육기관으로서 항공교통관제사 양성교육과 보수교육을 통하여 항공안전과 민항공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8.6.15>

제2조 (명칭) 본 항공교통관제교육원은 한국항공대학교 부속 항공교통관제교육원(이하 ‘관제교육원’ 이라 한다)이라 한다.<개정 2015.7.1.>

제3조 (위치) 본 관제교육원은 한국항공대학교 내에 둔다.<개정 2015.7.1.>

제2장 조직 및 편제

제4조 (조직) ① 본 관제교육원에는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본 관제교육원 전임 교원으로서 원장 1인을 두며, 원장은 교육원을 대표하고 그 운영에 관한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.

② <삭제 2012.8.24>

제5조 (과정 및 교육) 본 관제교육원은 항공교통관제사 양성과정과 보수교육과정을 두며 다음과과정의 교육을 수행한다.

① 항공교통관제사 양성과정

1. 정규과정
2. 특별과정

② 항공교통관제사 보수교육과정

1. 항공관리 중간관리자 과정
2. 항공관리 고급관리자 과정
3. 공역계획 및 설계과정

제6조 (교관의자격) ① 본 과정의 교관의 자격요건과 경력기준은 항공안전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[별표12] 8. 항공교통관제사과정 지정기준에서 정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.<개정 2018.6.15>

② 삭제<개정 2015.7.1>

③ 학과교육을 위한 교관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, 시간강사 또는 항공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.

④ 실기시험관은 2인 이상을 두며 자격요건과 경력기준은 제①항과 같다.<개정 2015.7.1.>

제7조 (운영위원회) ① 관제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 위원회를 둔다.

② 위원장은 교육원장으로 하고, 위원은 교무처장, 기획처장, 사무처장, 관제소장, 항공·교통·물류학부장(또는 관제교육원 학과주임교관)으로 구성하며, 간사는 교육원 직원 1인으로 한다.<개정 2018.6.15>

③ 운영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.

제8조 (운영위원회 임무)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1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항공교통관제교육에 관한 사항
2. 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
3. 규정에 관한 사항
4. 입과생 증·감원 및 입과비에 관한 사항<신설 2016.10.28>
5. 기타 중요한 사항<개정 2016.10.28>

제9조 삭제<2016.10.28>

제3장 학사운영

제10조 (입과) ① 본 관제교육원의 항공교통관제사 양성과정에 입과 할 수 있는 자는 항공법에 의한 신체검사 기준 제3종에 적합한 자로 하며 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② 그 외 과정에 대한 입과 자격은 별도로 제정한다.

제11조 (교육정원) 항공교통관제사 양성과정 및 보수교육과정의 연간 교육인원은 관할청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한다.<개정 2015.7.1.>

제12조 (입과서류) 본 관제교육원에 입과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과서류 및 기타 필요로 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3조 (학과 및 실기교육) 학과교육과 실기 교육내용은 항공안전법 제48조의 요건에 충족할 수 있도록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. 단, 항공교통관제사 정규과정의 학과교육은 본 대학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을 준용한다.<개정 2018.6.15>

제14조 (평가) 평가는 학과교육평가와 실기교육평가로 구분하며 평가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. 단, 항공교통관제사 정규과정의 학과 교육에 관한 평가는 본 대학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을 준용한다.

제15조 (휴학) 본 관제교육원 양성자 과정에 입과한 자의 휴학은 불허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원장은 허가할 수 있으며 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제16조 (유급) 본 관제교육원 양성자 과정 수료일까지 학과교육 및 실기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유급으로 하며 유급자에 대한 추가교육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.

제17조 (복학) 휴학자의 복학은 등록을 완료한 자로서 해당 학기에 휴학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해당학기 수업 개시 후 7일 이내에 복학하여야 한다.

제18조 (학점인정) 본 관제교육원 양성자과정 입과 전 본 대학교 항공교통물류학부 또는 국토교통부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항공관제교육기관에서 받은 학점 및 실습시간을 인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<개정 2012.8.24. 2013.12.5. 2018.6.15>

제19조 (제적) 본 관제교육원의 학생이 교육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, 본 규정 및 항공교통관제교육원 정규과정 운영세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원장은 제적처리

할 수 있으며, 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<개정 2015.7.1.>

제20조 (수료) 본 관제교육원의 교육과정 평가에 합격하고 수료한자에 대하여 소정의 이수증서를 수여한다.

제21조 (학생의무) 본 관제교육원에 입과한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생활을 충분히 하기 위하여 본 관제교육원의 규정 및 항공교통관제교육원 정규과정 운영세칙에 명시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<개정 2015.7.1.>

제22조 (재정) 본 관제교육원의 재정은 본 대학교 재정에 따른다.

제23조 (회계) 본 관제교육원의 회계는 본 대학교 회계연도에 따르며, 회계 관리는 대학본부에서 한다.

부 칙

1. 이 규정 이외의 교육원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한다.
2. 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3. 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04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4. 항공교통관제사 특별과정, 항공관리 중간관리자과정, 항공관리 고급관리자과정 및 공역계획 및 설계과정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제정한다.
5. 이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6. (경과조치) 2012년도 입과자부터 이 변경 규정을 적용한다.
7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.
8.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9.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하되 201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10. ① 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18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 ② (경과조치) 이 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입과한 자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.